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8
------	-----

2022.11.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11.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제안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2022.12.31)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¹⁾에 따라 만료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2022.12.31.)을 5년간 연장(2027.12.31.)하기 위해 제출됨.

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1965년에 조성되었고, 2018년부터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운용하고 있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자계정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용자와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등에 사용되며, 투자계정²⁾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조성한 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출자를 수행하고 있음.
- 용자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7,646억 8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270억 8천 6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400억원, 운용손실 4,024억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a)+(b)-(c)	일반회계 전입금(누계) (a)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b)	기금운용수익* (누계)(c)
764,686	927,086	240,000	△402,400

※ 2022.9월말 기준, 기금운용수익: 이차보전금, 기금운용수수료 등 소모성 지출 반영

- 용자계정에서 은행에 대하된 자금은 6,693억 4천 3백만원이며, 중소기업시설 설치지원금은 16억 8천 8백만원, 예치되어 있는 미대하자금은 936억 5천 5백만원임.
- 투자계정의 2022년말 조성액은 451억 8천 6백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128억 2천 8백만원 감소함.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 조성현황 >

(단위:백만원)

2021년말 조성액	2022년 조성계획			2022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58,014	40,788	53,616	△12,828	45,186

- 투자계정은 서울시가 투자펀드별 조성액의 5~15%를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을 합해 조성하며, 전문 펀드운용사가 일정 기간³⁾ 운영함.

- 투자계정으로 조성된 혁신성장펀드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약 3조 4,029억원(서울시 출자분 1,751억원)이 조성됨(목표대비 283%).

< 혁신성장펀드 연차별 조성 내역 >

(단위 : 억원/ 괄호:市 출자액)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10월 기준)
합 계	34,029 (1,751)	4,435 (192.5)	12,976 (448)	8,342 (508.5)	8,276 (602)
4차산업혁명	4,669 (277.5)	997 (32.5)	1,892 (72)	1,080 (78)	700(예정) (75)
스마트시티	4,274 (272.5)	386 (22.5)	2,323 (72)	1,065 (78)	500(예정) (120)
문화콘텐츠	3,278 (160)	700 (30)	505 (30)	759 (40)	1,314 (54)
창 업 지 원	13,498 (536)	772 (42.5)	5,766 (168)	2,488 (127.5)	4,472 (198)
재도전지원	2,748 (165)	200 (15)	1,328 (45)	700 (60)	520 (45)
바 이 오	5,862 (340)	1,380 (50)	1,162 (55)	2,250 (125)	1,070 (110)

3)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지침에 따라 운영기간을 8년(4년 거치, 4년 회수)으로 정했으나 피투자기업의 성장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자금회수를 결정하는 구조로 인해 투자금 회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이 중 서울 소재 470개 기업에 6,451억원의 목적 투자가 이뤄져 매출액(4조 4,075억원), 고용인원(1만 5,631명), 투자유치(4조 2,914억원) 등의 성과를 달성함.

< 혁신성장펀드 운영실적 >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市 목적 투자기업(개)	117	128	103	122	470
투자기업 매출액(억)	8,893	13,387	21,795	35,000	44,075
투자기업 고용지표(명)	5,395	3,539	6,694	7,500	15,631
대외 후속투자 유치(억)	7,868	9,835	25,211	32,000	42,914

- 2022년까지 투자가 진행중에 있어 전체적인 회수금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현재 9개 기업에서 약 13억 5천만원의 투자금이 조기 회수됨.
- 서울시는 혁신성장펀드 조성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바이오, AI, 콘텐츠 등)에 대한 펀드 투자를 통해 ‘서울 비전 2030 펀드’ (2023~2026)를 신규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계획임.⁴⁾
-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3,500억원을 바이오, 콘텐츠 등 6개 분야에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액을 합쳐 5조원의 펀드를 8년(투자 4년, 회수 4년)간 운용할 예정임.

4) 2023년도 출자에는 기조성된 혁신성장펀드 중 서울비전 2030펀드로 이어지지 않는 4차산업혁명펀드, 스마트시티펀드, 재도전지원펀드 잔여금 125억원에 대한 출자금이 포함됨.

<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 계획 >

구 분	조 성 방 안	조성 규모 (市출자액)	2023년 출자액
합계	투자분야	5조원 (3,500억원)	395억원
① 스케일업 펀드(신규)	·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5 구현을 위한 대규모 후속투자 목적의 스케일업	1조 4천억원 (1,100억원)	80억원
② 첫걸음동행 펀드(신규)	· 市 정책사업(R&D지원사업, 서울 비전 2030 등) 연계 및 민간시장 투자 소외기업 성장지원	25백억원 (500억원)	30억원
③ 디지털대전환 펀드(신규)	·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술기업(ICT, AI, 빅데이터 등) 지원	1조원 (600억원)	30억원
④ 창업지원 펀드(유지)	· 초기창업 분야 투자 강화 및 선배 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원	1조원 (550억원)	120억원
⑤ 서울바이오 펀드(유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등 미래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 지원	75백억원 (400억원)	75억원
⑥ 문화콘텐츠 펀드(유지)	· K-콘텐츠 강국을 선도할 서울 유망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우수기업 지원	60백억원 (350억원)	60억원

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판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에서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⁵⁾.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금 존치의 타당성과 필요성, 설치목적의 달성, 사업의 지속성,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글로벌 경기둔화, 대출금리·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미·중간 무역 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5)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15.7.24.) 이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까지 1차례 연장(2017.9.6.)된 바 있음.

- 따라서 서울시의 공적 정책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봉착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우수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관련 펀드의 조성·운영이 계속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8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22.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2022. 9. 8.~ 9. 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7년 12월 31일</u>----- ----- ----- ----- ----- -----.</p>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소상공인담당관, 오승백, 2133-5190